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227
----------	-------

발의연월일 : 2026. 9. 9.

발 의 자 : 서영석·남인순·서미화
전진숙·허종식·朴芝源
이수진·소병훈·박용갑
김교홍·김 윤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8 및 제59조의1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8제3항 중 “수사기관”을 “검사 또는 수사기관”으로, “장애인을 조사하는”을 “장애인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및 면담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조사를 하는”으로 한다.

제59조의16제1항 및 제2항 중 “조사·검증”을 각각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조사, 검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사·재판과정”을 “수사, 공소 및 재판과정”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9조의8(보조인의 선임 등) ① · ② (생략) ③ <u>수사기관이 학대받은 장애인</u> <u>을 조사하는</u>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제59조의8(보조인의 선임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검사 또는 수사기관-- 장애인</u> <u>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u> <u>면담(「형사소송법」 제245조</u> <u>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및</u> <u>면담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u> <u>조사를 하는 -----.</u>
제59조의16(진술조력인의 참여 등) ①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은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장 해인(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 라 한다)이 의사소통이나 의사 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피 해자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 의 조력과 원활한 <u>조사·검증</u> 또는 증인 신문을 위하여 직권 이나 피해자 또는 제59조의8제1 항에 따른 보조인(이하 이 조에 서 “보조인”이라 한다)의 신청 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제1 항에 따른 진술조력인으로 하여 금 조사과정, 검증 또는 증인 신	제59조의16(진술조력인의 참여 등) ① ----- ----- ----- ----- ----- ----- ----- <u>사실관계 확</u> <u>인이나 면담, 조사, 검증 -----</u> ----- ----- ----- ----- ----- -----

문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
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②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
은 피해자에 대한 조사·검증
또는 증인 신문 전에 피해자 및
보조인에게 진술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진술조력인의 수사
· 재판과정의 참여와 의무 등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② -----
----- 사실관계 확
인이나 면담, 조사, 검증 -----

-----.

③ ----- 수사,
공소 및 재판과정-----

-----.